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선거권 제한 사유 확대〉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9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31.
3. 회 부 일 : 2025. 4. 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의 실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이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형 종료 후 20년 경과)함. 아울러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중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윤리성·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포섭함(제1호의2 · 제1호의3 · 제2호의2 · 제2호의3 · 제3호의2 및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11호 · 제12호 신설).
- 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하여 재판중에 있는 자 등을 추가함(안 제19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의2·제6호·제7호·제8호·제11호·제12호), ②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9호), ③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하여 재판중에 있는 자(제11호)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9條(被選舉權이 없는 者) 選舉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舉權이 없다. <u>1. 第18條(選舉權이 없는 者)第1項 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 당하는 者</u> <u><신 설></u> <u><신 설></u> 2. (생략) <u><신 설></u> <u><신 설></u> 3. (생략)	第19條(被選舉權이 없는 者) ----- ----- -----. <u>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u> <u>1의2. 피성년후견인</u> <u>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2. (현행과 같음) <u>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u>2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 간 중에 있는 자</u>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4. 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3의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5. (현행과 같음) 6.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

현행	개정안
	<u>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u>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u> <u>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u> <u>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u> <u>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u> <u>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u>
<u><신 설></u>	9.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10.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하여 재판중에 있는 자
<u><신 설></u>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u><신 설></u>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피선거권 제한

현행법은 피선거권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접적인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피선거권 제한사유》

구 분	피선거권 제한사유 (「공직선거법」 제19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행위능력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피성년후견인
형사처벌	○ 금고 이상 형 실효 전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
특정 범죄	○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 수뢰죄 등으로 ①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 미경과, ②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미경과, ③징역형을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징역형 집행종료·면제·실효 후 10년 미경과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로 ①5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 미경과, ②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미경과, ③징역형을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징역형 집행종료·면제 후 10년 미경과 ○ 공직선거법 제230제6항(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벌금형 확정·실효 후 10년 미경과	○ 직무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 ○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①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20년 미경과, ②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 후 20년 미경과, ③ 벌금 이하의 형 확정 후 20년 미경과, ④ 치료감호 집행종료·면제 후 20년 미경과, ⑤ 파면·해임처분 후 20년 미경과
재정 문제	별도 규정 없음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함
징계처분	별도 규정 없음	○ 파면 후 5년 미경과 ○ 해임 후 3년 미경과
자격 상실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권/피선거권 정지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상실·정지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력,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진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선출직과 경력직공무원 간 임용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피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핵심요소로서 피선거권 제한 시에는 비례의 원칙¹⁾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결정한바,²⁾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의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의 제한이 목적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필요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비례의 원칙은 오늘날 법의 일반원칙으로 이해되어 공·사법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37조제2항으로부터 비롯된다. 비례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판단의 기준이다.(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1. p.332)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여야 한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재, 2007.6.28., 2004헌마644 결정)

목적과 경중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피선거권 제한의 근거로 규정하는 경우, 국민주권에 기반한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은 공정한 인사행정과 직무수행 능력 보장을 중시하여 결격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피선거권 제한을 주로 선거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³⁾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무담임권이 포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3)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⁴⁾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면서, 선거범죄나 뇌물수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반면,⁵⁾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피선거권을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범죄의 태양과 피선거권 제한 간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5)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선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상관관계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⁶⁾

헌법재판소는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바,⁷⁾ 범죄의 유형,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⁸⁾의 불명확한 구성요건으로 인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제7조 위반 비중이 가장 큰바,⁹⁾ 이는 조문의 불명확성과 추상성으로 인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

-
- 6) 「국가보안법」 상 범죄 유형: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제3조),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 등(제7조), 회합·통신 등(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 특수직무유기(제11조), 무고·날조(제12조)
- 7)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입법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헌재 2009.10.29., 2007헌마1462 결정)
- 8)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9)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검찰이 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 총 160명 중 동법 제7조 위반이 94명(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2022. p.3)

및 남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으며,¹⁰⁾ 유사한 취지로 동조의 위험성에 대한 학계 및 인권단체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¹¹⁾ 등을 고려할 때, 동조에 근거한 피선거권 제한의 적절성, 제한 대상·기간의 구체화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한 범죄로 어떠한 종류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피선거권 등 자격 제한을 가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목적과 그 수단 사이의 비례성 준수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③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중에 있는 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며, 재판이 계속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는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제고, 국민의 정치 불신 해소, 보궐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약, 공직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1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2022. p.19

11) 박상식,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사례와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13년
여경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위헌성」, 전남대학교, 2019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1992년, 1999년, 2006년, 2016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012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헌법재판소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¹²⁾고 판시한바, 확정되지 않은 형사 절차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둘째, 하급심에서 징역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할 경우, 장차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침해된 공무담임권은 회복되기 어려운 등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균형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공무원 임용 또는 자격제한 등에 관한 법령이 대부분 ‘확정판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의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12)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후,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을 유일한 요건으로 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불이익을 가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0.9.2., 2010헌마418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